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단의 명칭은 “CTS장로합창단”(이하 ‘단’으로 약칭함)이라 칭한다.

### 제2조(소재지)

단의 사무소는 “CTS 기독교TV” 서울본사 내에 둔다.

### 제3조(목적)

단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연합과 CTS기독교TV를 설립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국내·외의 전도와 선교활동 및 단원 상호화합과 유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단 원

### 제4조(자격)

단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 2024.6.22.임시총회)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 또는 교회에 소속된 자는 입단이 불가하다.

1. 기독교 각 교단 소속교회의 남성 장로로서 본 단의 창단 목적에 찬성하며, 음악성이 있는 자.
2. 장로장립일이 확정된 남성 피택장로로서 전호의 자격을 갖춘 자.

### 제5조(입단) (개정 : 2024.6.22. 임시총회)

단의 입단은 만65세 이하의 자로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65세를 초과하는자의 경우 단원 중 반대자가 없으면 입단할 수 있다.

1. 정기 입단 : 매년 1월중 입단지원자를 임원회(지휘자 포함)에서 심의한다.
2. 수시 입단 : 각 파트의 화음과 균형을 위해 필요시 임원회(지휘자 포함)에서 심의한다.

### 제6조(단원의 권리와 의무) 본 단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총회 결의사항 이행
3. 단의 찬양연습과 찬양행사, 부서활동 등 제반 행사 참석
4. 단원으로서의 품위유지
5. 단비 및 제 부담금 납부

## 제7조(제명)

- ① 단원의 제명 사유는 다음과각 호와 같다.
1. 제6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단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습에 무단 불참하거나, 3개월이상 연속하여 월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3. CTS와 단의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킨 경우.
  4. 단원 간 불화를 조장하여 단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 ② 단원의 제명절차는 실무임원회에서 임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결의로 제명한다.

## 제3장 임 원

### 제8조(임원의 구성)

① 단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2024.6.22. 임시총회)

1. 명예단장(당연직): CTS회장
2. 전임단장
3. 단장
4. 부단장 : 약간 명
5. 총무행·정총무 : 1~2명
6. 서기기·록서기 : 1~2명
7. 회계출·납회계 : 1~2명
8. 감사 : 2명
9. 고문 및 자문위원 : 약간 명
10. 각 파트장
11. 각 부 부장
12. 중창팀장

② 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지도목사, 고문, 자문위원 등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2024.6.22. 임시총회)

1. 단장 : 단을 대표하며, 단의 회무일체를 총괄한다.
2.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며, 제18조의 회계연도 중 단장의 일시적 유고 시에는 전형위원회에서 부단장 중 1인을 선임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3. 총무 : 단의 제반 사무를 유기적으로 수행되도록 총괄한다.
  - 행정총무는 총무를 보좌하고 유고 시 대행한다.
4. 서기 : 단의 행정사무 일체(단원카드, 기도순서, 역사기록, 문서함 등) 및 모든행사의 기록(문서와 USB 등)과 보관업무를 담당한다.
  - 기록서기는 서기를 보좌하고, 유고 시 대행한다.
5. 회계 : 단의 재정업무와 예·결산 사항을 관장 집행하며 필요시 각종 회의에 보고 한다.
  - 출납회계는 회계를 보좌하고 유고 시에 대행한다.
6. 고문과 자문위원 : 단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원회에 참석하여 단장과 부단장의 업무 수행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7. 감사 : 단의 사무행정과 회계 기록관리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 및 필요시 임원회에 보고한다.
8. 파트장 : 각 파트별 연습과 단원 파악, 관리 업무연락 등을 관장한다.
9. 부장 : 소관 부서의 업무를 주관한다.
10. 중창팀장 : 중창팀의 업무를 주관한다.

#### **제10조(임원 선임 및 해임) (개정 : 2024.6.22. 임시총회)**

1. 단장은 전형위원회에서 후보자 1인을 선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CTS에 추천하고, CTS가 임명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3. 제8조 제 4호 내지 제7호의 임원들은 단장이 일괄 추천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4. 제8조 제 9호 내지 제12호의 임원 선임은 단장에게 위임한다. 이경우, 중창팀장은 중창 팀의 추천을 받는다.
5. 지휘자는 전형위원회에서 후보자 1인을 선출하여 CTS에 추천하고, CTS가 임명한다.
6. 반주자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전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7. 단장 및 지휘자가 그 직임을 수행하는데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형위원회의 의결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CTS가 해임할 수 있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개정 : 2024.6.22. 임시총회)**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제18조의 회계기간 중 단장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회계기간 종료 후 재선임하되 임기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단,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 임원을 재선임하며 임기는 제1항을 준용한다.
3. 단장외에 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지휘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시 제10조 제5호를 준용하여 임명한다.
- 반주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시 제10조 제6호를 준용하여 임명한다.

## 제4장 회의 및 위원회

### 제12조(회의체) (개정 : 2024.6.22. 임시총회)

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회의체를 둔다. 이경우 단장이 각 회의체의 의장이 된다.

- 정기총회 : 단원 전체가 참여하는 정기 회의
- 임시총회 : 단원 전체가 참여하는 임시회의
- 확대임원회 : 전 임원으로 구성된다. 필요시 지휘자가 참석할 수 있다.
- 실무임원회 : 전임단장, 단장, 부단장, 총무, 서기, 회계, 행정총무, 기록서기, 출납회계로 구성된다. 필요시 파트장, 지휘자 등이 참석할 수 있다.
- 전형위원회 : 현직단장 및 전임단장으로 구성된다.

### 제12조의2(위원회) (개정 : 2024.6.22. 임시총회)

- 단의 중요행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시적인 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경우, 단장은 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정기연주회 준비위원회 : 정기연주회를 위한 임시조직
  - 해외연주회 준비위원회 : 해외연주회를 위한 임시조직
- 제1항의 특별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확대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그 집행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결과보고에는 자체 평가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결과 보고 후 그 특별위원회는 해산되고 그동안 생산된 모든 서류는 제8조 제6호의 서기에게 인계하여 보관 관리하도록 한다.

### 제13조(회의체 기능)

-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감사선임, 단장후보자 의결, 단장 및 지휘자 해임 안 의결, 임원 추인,
  - 외부 명예직(지도목사, 고문, 자문위원)추대
  - 단칙 개정
  - 단의 발전계획 및 연간 사업계획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기타중요사항의 의결

2. 확대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회의 위임사항
  - 2) 단의 발전계획 및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특별위원회의 계획, 예산, 결과보고 등의 승인
  - 5) 기타 단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3. 실무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2024.6.22. 임시총회)
  - 1) 총회 및 확대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2) 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실무
4. 전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장 후보자 선출
  - 2) 제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단장 직무대행자 선임
  - 3) 제10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지휘자 후보자 선출
  - 4) 제10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반주자 선출
  - 5) 제10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단장 및 지휘자의 해임 관련 업무

#### 제4조(회의 소집)

각 회의체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총회는 단장이 소집하며,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단장 혹은 단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단장이 소집한다.
3. 확대임원회는 필요시 단장이 소집한다.
4. 정기실무임원회는 매월 말, 임시실무임원회는 필요시에 단장이 소집한다.
5. 전형위원회는 필요시 단장이 소집한다. (개정 : 2024.6.22. 임시총회)

#### 제15조(의결) (개정 : 2024.6.22. 임시총회)

1. 총회는 단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경우, 가부가 동수일 때는 단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단칙 개정은 실무임원회에서 개정을 발의하거나, 단원 1/3이상의 개정 요구가 있을 경우, 단원 2/3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발의하여 출석단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실무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전형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각 회의체는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경우, 보관 관리 담당자는 제8조 제6호의 서기로 한다.

## 제5장 부서 등

### 제16조(실무부서) (개정 : 2024.6.22. 임시총회)

- 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무부서를 둘 수 있다.
1. 악보부 : 악보 및 악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 친교부 : 단원 간의 유대를 친밀하게 하기위한 제반 친교사역(기도회, 수련회 등)을 담당한다.
  3. 경조부 : 단원의 애경사 등에 참여하여 가족들을 축하 및 위로하는 사역들을 담당한다.
  4. 전도·선교부 : 국내전도 및 해외선교 등을 담당한다.
  5. 봉사부 : 대내·외 구제업무와 봉사활동에 관한 제반 사역을 담당한다.
  6. 홍보부 : 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대외 홍보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7. 신입단원부 : 신입단원이 단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다.

### 제16조의2(중창팀) (개정 : 2024.6.22. 임시총회)

1. 단의 순회찬양에 동참하고, 단을 대표하여 각종 찬양활동을 한다.
2. 장로챔버콰이어 등 별도의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다.
3. 중창팀 팀원은 지휘자가 추천하여 단장이 임명한다.

### 제17조(여성부)

1. 단원의 부인으로 구성되고, 단의 발전을 기도로 후원하며, 필요시에 찬양과 선교에 동참하도록 한다.
2. 패밀리합창단 등 별도의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 2024.6.22.임시총회)

### 제17조의2(자율적인 조직) (개정 : 2024.6.22. 임시총회)

단에 조력하기 위하여 또는 단원 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실버중창단, 탁구동아리, 등산부 등 단원들의 자율적인 조직을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자율적인 조직의 대외 활동은 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

## 제6장 재 정

### 제18조(회계연도)

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19조(재정)

1. 단의 운영을 위한 소요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단원의 단비(총회에서 결정)
  - 2) 임·역원의 분담금
  - 3) 각종 찬양연주 수입금

#### 4) 기타현금 및 협력지원금

2. 단의 재정과 각종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0조(예·결산 및 회계) (개정 : 2024.6.22. 임시총회)

1. 예산은 실무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은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예산 총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시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3.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먼저 지출결의서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영수증을 지출결의서 이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구류 소모품구입 등 소액지출과 반복적인 지출, 이미 결정된 행사의 진행에 따른 당연한 지출 등은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예산 집행에 따른 회계내역은 “종이장부 또는 USB등 기억장치”에 명확성 객관성 타당성 있게 기록하여야 한다.
5. 정기연주회 및 해외연주회 등 대규모 행사를 위한 여행사, 대행회사 등 과의 거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경우 3개이상의 업체를 지명하여 경쟁을 통한 최저가의 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품질, 신뢰도 등 정성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의 2의 특별위원회 또는 별도의 조직을 통한 집단 의사결정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7. 제5항의 경우 삼백만원 이상의 선급금이 지급될 때에는 보험회사 또는 당해업체가 소속된 협회 등이 발급한 선급금 지급보증서 징구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장 기 타

### 제21조(휴단)

신상의 사정으로 휴단을 원할 시에는 휴단신청서를 작성하여 파트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월 1만원을 휴단 개월 수 만큼 선납하였을 때에만 휴단 단원으로 인정한다. 휴단 복귀 시에는 별도의 입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제22조(상호부조)

단원의 경조사에 단에서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조비는 실무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3조(서류보관 관리) (개정 : 2024.6.22. 임시총회)

종이 또는 USB등 기억장치에 기록된 장부, 회의록, 계약서, 지출증빙서류, 정기연주회자료, 회외연주회자료 등 주요 서류는 소관 임원이 인계 인수하여 10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영수증 등 경미한 자료는 5년간 보관 관리한다.

### 제24조(준용규정) 이 단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부 칙

(창립총회에서 제정)

**제1조(시행일)** 이 단칙은 2011년 5월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창립년도의 회계연도는 창립총회일로부터 창립년도 12월말 까지로 한다.

## 부 칙

(1차 부분개정)

**제1조(시행일)** 이 단칙은 2012.3.3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차 부분개정)

**제1조(시행일)** 이 단칙은 2013.2.1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단칙은 2013.1.1.부터 소급 적용한다.

## 부 칙

(3차 부분개정)

**제1조(시행일)** 이 단칙은 2014.2.15.부터 시행한다.

## 부 칙

(4차 부분개정)

**제1조(시행일)** 이 단칙은 2016.6.11.부터시행한다.

## 부 칙

(5차 부분개정, 2024.6.22.임시총회)

**제1조(시행일)** 이 단칙은 2024.7.1.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1. 이 단칙 시행일 전에 65세를 초과하여 입단한 단원은 제5조 단서에 의하여 입단한 것으로 본다.
  2. 이 단칙 시행일 전에 단장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단장 및 임원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